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36 제출연월일: 2024. 11. 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리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로, "신고가 수리된 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신고를 수리한"로, "신고가 수리된 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

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4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u><삭 제></u>
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	
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	<u><삭 제></u>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u>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⑥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에 따른 신고를 <u>수리한</u> 경우 또 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 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 경) ① (생 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 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u>받은</u>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 경)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 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저 (생 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u> <u>항</u>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 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 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

4
<u>받은 경우</u>
 세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8
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
<u>장업에 관하여 제1항</u>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군수·구청장이</u>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음
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
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
<u>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u> <u>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u>
수리한
<u>, , </u>

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 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 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 유악영 상물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 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 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8)·(9) (생 략)

⑦ <u>시장·군수·구청장이 제3</u>
<u>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u>
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
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
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
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u>시장</u>
·군수·구청장이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
<u>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u>
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
리한 날
,

⑧ · ⑨ (현행과 같음)